

공시송달_시작프로덕션 주식회사

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공고

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반환명령 통보 공시송달

다음 당사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한 자로 제30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, 제31조(보조금의 반환) 대상자입니다. 보조금 반환명령 통보 및 등기우편(내용증명)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실시합니다.

2025년 6월 24일

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위원장

1. 공고 사유: 행정처분서(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통지)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
2. 법적 근거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30조, 제31조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
4. 공고기간 : 2025.6.24. ~ 7.23.
5. 공고사항

당사자	주소	처분 내용
시작프로덕션 주식회사 (임선진)	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83, 4층 (혜화동)	○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반환 명령 공시송달 - 보조사업명 :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<청춘소음> - 교부결정액 : 200,000,000원(자부담 100,000,000원 별도) ○ 보조금 반환명령 - 반환명령액 : 총 219,671,230원 - 보조금 : 200,000,000원 - 이자 : 19,671,230원(25.6.10기준, 이자 발생기간 719일) * 이자 가산 기준은 교부일로부터이며, 법정이율 연 5%를 적용함. 기한 내 미환반시 이자액 변경

6. 이의신청 :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2025.7.23.)
7. 반환기한 :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이의신청 시에는 검토결과를 최종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)
8. 반환금 납부 방법 : E나라도움 및 아래 고지된 반납계좌로 납부
○ 신한은행 : 100-031-2455432 (예금주 :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)

9. 담당부서

- 기관명(담당팀): 한국문화예술위원회(극장운영팀)
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8길 7, 아르코예술극장
- 문의처 : 02-3668-0066, songs@arko.or.kr

<이의신청시 유의사항>

- 가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「보조금법」 제37조(이의신청 특례)에 의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- 나. 이의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다. 귀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라.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- 붙임. 이의신청서(양식) 1부. 끝.